

* 축산뉴스 (소) *

‡ 30개월 이상 미산쇠고기 수입시

국회심의 거쳐야

광우병 발생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대해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규정도 신설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9일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관고시였던 수입위생조건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규정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입중단을 즉각 실시 ▲수입중단 된 쇠고기를 다시 수입 재개할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 ▲특정위험물질은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대신 가축법 부칙(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아 기존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는 인정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가축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일본, 대만 등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가 한국보다 개방폭이 적을 경우 정부가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해 재협상 하도록 합의했다.

‡ 쇠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영장 기각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들에게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시국 상황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들에게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방어권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수입 사골과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정육점 업자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통해 "피고인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국을 감안하는 것보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각 사유가 충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전주시 서신동 소재 정육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호주산 사골 52.6kg(52만원 상당)과 칠레산 삼겹살 1천679kg(2천182만원 상당), 미국산 목살 36kg(4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 식육가공·판매업자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9월부터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에 대한 추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 및 판매업자에게도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14일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자에게만 판매일·판매처·판매량 수입일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토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상범위가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안심·등심·채끝·양지·갈비 등 5개 부위의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을 말한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후 판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